

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(제53조제2항 관련)

1. 입거(入渠)되거나 상가(上架)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.
2.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,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.
 - 가.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,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참관해야 한다.
 - 나.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,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.
 - 다.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(部材)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.
 - 라.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.

항 목	수압시험의 기준
1) 이중저	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
2)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(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)	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. 다만,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[2 kgf/cm ²]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
3)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	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[2 kgf/cm ²]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
4) 선미창(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) 및 선미관구확실(선미관이 설치된 구역)	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. 다만,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[2 kgf/cm ²]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
5)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	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) 넘침관의 상단 나) 만재흡수선
6) 디프탱크	다)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
7) 축로	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[2 kgf/cm ²]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
8) 그 밖의 수밀통로	
9)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 칸막이벽의 출입구	
10)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(창구를 포함한다)	
11) 현문, 재화문 및 현창	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
12)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	
13)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	호스 내 압력 2 bar [2 kgf/cm ²] 이상의 사수압력

마.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, 시험압력, 시험방법,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,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, 현장 참관 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.

- 1) 기밀시험의 압력은 0.2bar[0.2kgf/cm²]로 한다.
- 2)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.
- 3)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(檢知液)을 발라 확인한다.
- 4) 현장 참관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.